

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1 - 448호

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6항 및 물류설비인
중요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성능검사기
관(지정번호 제2009-1호)지정사항중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
이 고시합니다

2011년 10월 14일
기술표준원장

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지정 변경

구분	변경전	변경후	비고
1. 지정번호	제2009-1호	제2009-1호	변경없음
2. 기 관 명	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	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	변경없음
3. 대 표 자	원장 오태식	원장 송재빈	변경
4. 소 재 지	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-28	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-28	변경없음
5. 검사범위	물류설비인증대상 전 품목	물류설비인증대상 전 품목	변경없음
6. 유효기간	2009. 12. 31-2012. 12. 30(3년)	2009. 12. 31-2012. 12. 30(3년)	변경없음